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정춘화^{*}, 고성희^{**}, 김지영^{**}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Chun Hwa Jung*, Sung Hee Ko**, Jiyoung Kim** Dep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Disciplines, Youngd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 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 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 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정신질환자, 권리인식, 권리보장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of mental health care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1 mental health care workers from 10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located in J city,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one instrument measuring participants'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and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with SPSS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mental healthcare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every subscales. Besides, the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guarantee toward psychiatric patients' righ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ticipants' occupations. Based on the findings, guiding where nursing education efforts should be focused to help putting in place the psychiatric patients' rights.

Key Words: Mental Health Care Worke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Recognition, Guarantee

Received 25 June 2013, Revised 1 August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Kim(Dep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kimjjy@j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정신절환자의 인권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1년 유엔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원칙'[1] 및 유엔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된 '정신질환자 인권향상을 위한 지침'[2]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공동으로 '정신질환자 권리옹호'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시작되었다. 국가 정신보건정책 측면에서도 정신질환자인권증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기반조성으로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3].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 인증평가기준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권익을 보장 여부가 명시되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전정사건은 2001년~2005년 361건, 2006년 254건, 2007년 33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침해 사례의 내용은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부당한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정신질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나 의견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표현이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5]. 또한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질환자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6][7][8].

특히, 정신보건시설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9],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실제 치료와 간호에 관여하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옹호자 역할이 요구된다[10].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

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실제 보장하는 있는 실태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정신과간호사[11]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2]이외에는 드물다. 실제 정신질환자 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권리보장 을 위한 실천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정신 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권리 의식, 권리 교육 기획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필 요하며, 나아가 실제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을 알아보기 위함이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 식과 보장 정도를 파악한다.
- 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 식과 보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과 보 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와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정신보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구 참여를 허락한 231명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기관장의 승인 후에 연구대상자에게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과 과정에 대해한 충분한 설

명을 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 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참여에 승인한 대상 자는 총 254명이었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231 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 한 11문항, 정신질환자 권리 측정도구 50문항 등 총 61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 인식정도 는 권신혜[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50문항이며, 기본적 권리(6문항), 입원(6문항), 비밀보장(3문항), 치료받을 권리(7문항), 사 전 동의(13문항), 일상생활 및 환경(10문항), 치료를 거부 할 권리(5문항) 등 7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권 신혜[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3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06이었다.

2.3.2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정도 는 권리인식 측정도구인 권신혜[12]의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보장 정도를 파악하였다. 정신질환자 권리 보장정 도도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권신혜[12]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950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95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정 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은 평균,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시 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과 보장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Tukev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1명(26.4%), 여자 170명 (73.6%)이었다. 연령은 20~63세 범위에서 평균연령은 33.22±9.65세였다. 연령분포는 20~29세가 108명(46.8%) 으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이 20명(8.7%)으로 가장 적었 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100명(43.3%)으로 가장 많았 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44명(62.3%)이었다. 결혼 상태 는 미혼 116명(50.2%), 기혼 113명(48.9%), 기타 2명 (0.9%)이었다.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123명(53.2%)으 로 나타났대[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N=231)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Gender | Male | 61 | 26.4 |
| | Female | 170 | 73.6 |
| Age(year) | 20~29 | 108 | 46.8 |
| | 30~39 | 62 | 26.8 |
| | 40~49 | 41 | 17.7 |
| | ≥50 | 20 | 8.7 |
| Education | < High school | 40 | 17.3 |
| | College | 100 | 43.3 |
| | University | 64 | 27.7 |
| | ≥ Graduate | 19 | 8.9 |
| | Others | 8 | 3.4 |
| Religion | Yes | 144 | 62.3 |
| | No | 87 | 37.7 |
| Marital status | Single | 116 | 50.2 |
| | Married | 113 | 48.9 |
| | Others | 2 | 0.9 |
| Income | < 100 | 41 | 17.7 |
| (10,000won/month) | 100~< 200 | 123 | 53.2 |
| | 200~< 300 | 54 | 23.4 |
| | ≥ 300 | 13 | 5.6 |
| Occupation | Nurse | 124 | 53.7 |
| | Doctor | 18 | 7.8 |
| | Social worker | 6 | 2.6 |
| | Psychiatric | 41 | 17.7 |
| | technician | | |
| | Administrative staff | 16 | 6.9 |
| Work place | Caregiver | 26 | 11.3 |
| | Psychiatric ward in general hospital | 101 | 43.7 |
| | Mental hospital | 117 | 50.6 |
| | Psychiatric clinic | 5 | 2.2 |
| | Others(Geriatric | 8 | 3.5 |
| Longth of comics of | hospital) < 1 | 73 31 | |
| Length of carrier at | < 1 | 13 | 31.6 |

| 1~< 3 | 62 | 26.8 |
|--------|---|--|
| 3~< 5 | 36 | 15.6 |
| 5~< 10 | 24 | 10.4 |
| ≥ 10 | 36 | 15.6 |
| Yes | 112 | 48.5 |
| No | 119 | 51.5 |
| | $3 \sim < 5$ $5 \sim < 10$ ≥ 10 Yes | $3 \sim < 5$ 36 $5 \sim < 10$ 24 ≥ 10 36 Yes 112 |

대상자의 직종은 간호사가 124명(53.7%), 보호사는41 명(17.7%), 간병인 26명(11.3%), 의사 18명(7.8%), 행정 · 영양사 16명(6.9%), 사회복지사 6명(2.6%)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기관은 대상자의 근무기관은 전문정신병원 117명(50.6%), 종합병원정신과 101명(43.7%), 기타 8명(3.5%), 정신과 의원 5명(2.2%)이었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73명(31.6%), 1년 이상~3년 미만 62명(26.8%), 10년 이상은 36명(15.6%)이었다. 학회 및 세미나 등 권리교육에 112명(48.5%)이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보장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은 3.81±.37점, 보장정도는 3.18±.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7.363, p<.001). 하위 영역별 권리 인식정도와 보장정도의 차이는 치료받을 권리(t=18.878, p<.001), 사전 동의(t=18.854, p<.001), 기본적 권리(t=17.666, p<.001), 비밀보장(t=14.033, p<.001), 입원(t=12.549, p<.001), 일상생활 및 환경(t=10.566, p<.001), 치료를 거부할 권리(t=4.733, p<.001)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표 2].

(Table 2)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N=231)

| | | | | , | |
|----------------------------|----------------|----------------|--------|-------|--|
| Categories | Mean±SD | | - t | | |
| Categories | Recognition | Guarantee | - t | p | |
| Right to treatment | 4.12±.46 | 3.30±.56 | 18.878 | <.001 | |
| Informed consent | 4.27±.45 | $3.49 \pm .65$ | 18.854 | <.001 | |
| Fundamental right | $3.91 \pm .52$ | 3.06±.65 | 17.666 | <.001 | |
| Confidentiality | 4.02±.51 | 3.28±.74 | 14.033 | <.001 | |
| Admission | 3.48±.55 | 2.89±.58 | 12.549 | <.001 | |
| Daily life and environment | 3.68±.44 | 3.26±.54 | 10.566 | <.001 | |
| Right to refuse treatment | 3.20±.59 | 2.99±.58 | 4.733 | <.001 | |
| Total | 3.81±.37 | 3.18±.51 | 17.379 | <.001 | |
| | | | | | |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 인식과 보장

3.3.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 인식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석사이상 (3.98±.39)과 전문대졸(3.87±.35) 그룹이 고졸이하(3.64±.32) 그룹보다 권리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4.278, p=.002). 종교가 있는 그룹(3.87±.39)이 종교가 없는 그룹 (3.72±.33)에 비해 권리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3.066, p=.002). 월수입 300만 원 이상(4.07±.38), 200~300만원 (3.80±.32), 100~200만원(3.87±.36)인 그룹이 100만원미만(3.58±.36)인 그룹보다 권리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3.86±.35)와 사회복지사(4.10±.55)가 보호사(3.63±.37)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3.483, p=.005). 인권교육을 받은 그룹(3.88±.39)이 받지 않은 그룹(3.75±.35)보다 권리인식정도는 유의하게 높았다(t=2.759, p=.006).

3.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장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시설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그룹((3.62±.51)이 100만원 미만(3.14±.51), 100~200만원(3.18±.54), 200~300만원의 그룹(3.10±.45)보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장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2, p=.015). 정신보건시설의 유형에 따라서는 종합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그룹(3.21±.48)과 정신전문병원 근무 그룹(3.20±.53)이 기타(노인병원내 정신병동)(2.70±.30)보다 권리보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068, p=.008). 근무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인 그룹(3.33±.51)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의 그룹(3.05±.48)보다 권리보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3.289, p=.012).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

(Table 3)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Guarantee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1) | | | | | | | | |
|---|---|-----|----------------|--------|--|----------------|-------|-----------------------|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Recognition | | Guarantee | | | |
| | | | Mean±SD | F/t | p | Mean±SD | F/t | p |
| Gender | Male | 61 | $3.73 \pm .43$ | -1.971 | .069 | 3.24±.54 | 1.075 | .283 |
| | Female | 170 | 3.83±.35 | | | 3.15±.50 | | |
| Age(year) | 20~29 | 108 | $3.80 \pm .37$ | .707 | .548 | 3.21±.52 | .415 | .742 |
| | 30~39 | 62 | $3.78 \pm .35$ | | | 3.13±.46 | | |
| | 40~49 | 41 | 3.88±.37 | | | 3.16±.53 | | |
| | ≥50 | 20 | 3.85±.47 | | | 3.16±.63 | | |
| Education* | < High school ^a | 40 | $3.64 \pm .32$ | 4.278 | .002 | 3.04±.47 | 1.034 | .391 |
| | College ^b | 100 | 3.87±.35 | | a <b,d< td=""><td>3.21±.49</td><td></td><td></td></b,d<> | 3.21±.49 | | |
| | University ^c | 64 | 3.80±.40 | | | 3.19±.53 | | |
| | ≥ Graduate ^d | 19 | 3.98±.39 | | | $3.17 \pm .68$ | | |
| | Others ^e | 8 | 3.66±.30 | | | 3.31±.41 | | |
| Religion | Yes | 144 | 3.87±.39 | 3.066 | .002 | 3.23±.55 | 1.975 | .052 |
| J | No | 87 | 3.72±.33 | | | 3.09±.44 | | |
| Marital status | Single | 116 | 3.79±.38 | .257 | .773 | 3.25±.51 | 2.359 | .097 |
| | Married | 113 | 3.83±.37 | | | 3.11±.51 | | |
| | Others | 2 | $3.79 \pm .14$ | | | 2.93±.65 | | |
| Income† | < 100 ^a | 41 | 3.58±.36 | 9.229 | <.001 | 3.14±.51 | 3.582 | .015 |
| (10,000 won/month) | 100∼< 200 ^b | 123 | 3.87±.36 | | a <b,c,d< td=""><td>3.18±.54</td><td></td><td>a,b,c<d< td=""></d<></td></b,c,d<> | 3.18±.54 | | a,b,c <d< td=""></d<> |
| , | 200∼< 300° | 54 | 3.80±.32 | | | 3.10±.45 | | |
| | $\geq 300^{d}$ | 12 | 4.07±.38 | | | 3.62±.51 | | |
| Occupation* | Nurse ^a | 124 | 3.86±.35 | 3.483 | .005 | 3.23±.52 | 1.982 | .082 |
| | Doctor ^b | 18 | 3.86±.40 | | a,c>d | 3.26±.50 | | |
| | Social worker ^c | 6 | 4.10±.55 | | , | 3.06±.39 | | |
| | Psychiatric technician ^d | 41 | 3.63±.37 | | | 3.21±.57 | | |
| | Administrative staff ^e | 16 | $3.75\pm.42$ | | | 2.85±.27 | | |
| | Caregiver ^f | 26 | $3.78\pm.32$ | | | 3.06±.47 | | |
| Work place [†] | Psychiatric ward in general hospital ^a | 101 | 3.79±.34 | .334 | .800 | 3.21±.48 | 4.068 | .008 |
| P | Mental hospital ^b | 117 | 3.83±.40 | | | 3.20±.53 | | a,b>d |
| | Psychiatric clinic ^c | 5 | 3.75±.28 | | | 2.71±.18 | | , |
| | Others(Geriatric hospital) ^d | 8 | 3.76±.21 | | | 2.70±.30 | | |
| Length of carrier at | < 1 ^a | 73 | 3.79±.36 | .568 | .686 | 3.33±.51 | 3.289 | .012 |
| psychiatric | 1~< 3 ^b | 62 | 3.78±.43 | | | 3.05±.48 | 000 | a>b |
| wards(year)† | 3~< 5° | 36 | 3.81±.34 | | | 3.11±.42 | | |
| | 5~< 10 ^d | 24 | 3.88±.29 | | | 3.05±.58 | | |
| | ≥ 10° | 36 | 3.87±.39 | | | 3.25±.55 | | |
| Experience in human | Yes | 112 | 3.88±.39 | 2.759 | .006 | 3.23±.53 | 1.568 | .118 |
| rights education | No | 119 | 3.75±.35 | 2.100 | .000 | 3.13±.49 | 1.000 | .110 |
| † Tulzov toet | 110 | 110 | 0.1000 | | | 0.1040 | | |

[†] Tukey test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보장하는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인식과 실제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 식과 실제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자의 권리 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의 정 도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 은 '사전 동의'에 관한 권리인식이 가장 높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권신혜[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인식은 실제보장 정도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 종사 자들이 사전 동의에 대한 인식수준 만큼 실제적인 보장

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예측 불허한 자해, 타해의 위급한 상황이나 환자의 병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 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방해요인을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 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김기숙[11], 김 선민[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치료를 거부 할 권리'의 세부 문항들 중에서 특히 '정신질환자는 자신 의 장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문항에 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은 판단력과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치료자의 권위와 재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이 제한받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14].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 은 자신의 치료과정과 임상적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는 연구결과[15]에 비춰볼 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 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식과 보장의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와 월수 입이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권리인식이 높다고 보고한 김선민[13]과 권신혜[12]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그 룹이 없는 그룹에 비해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권신혜[12]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어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직종에 따른 권리인식 정도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보호사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 사나 사회복지사는 교육과정, 체계적인 교육과 세미나, 학회 등에서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은 반면, 보호사 는 주로 경험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호사는 현재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생 활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 시설 관련 진정사건을 분석해보면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보호사들에 대한 진정 사건이 가장 많았다[4]. 따라서 보 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강박·격리지침을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보호사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훈련을 실시하여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주효경[16]의 연구에 비춰볼 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감수성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세미나 및 학회 등 권리 교육 참석 경험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권리 교육에 참석경 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권리 인식정도가 높았 다.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정신보건시설 종사 자들이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현재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4 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이 고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이해, 인권을 존중·보호하는 방법,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교육 등 실제적인 교육을 정신보 건시설 내에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2008년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 인증평가 과정에 서도 정신보건시설 중 종합병원정신과, 전문정신병원의 보장정도가 기타(노인전문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병원인증평가, 국 가 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등의 외부적인 감독과 규제의 영향이라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권리 보장의 정도는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그룹이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 단일군을 대상으로 한 권신혜[12]의 연구에서권리보장의 정도가 5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고 2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보장의정도가 줄어든다면 지속적이고 강화된 인권 교육과 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인식과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 보호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식과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를 임의표집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의 권리인식과 보장에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보호사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UN,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46–119. 1991.
- [2] WHO, Guidelin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 with mental disorders. Division of Mental and Prevention of Substance, Geneva, 1996.
- [3] Y. J. Ha, S. N. Jeon, H. S. Hong, J. H. Kim, A study on mental health policy for psychiatric patients' rights.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Research & Education, Seoul National Hospital, No 12, pp. 1–284, 2006.
- [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2007.
- [5] J. H. Park, Psychiatric nurses perception in ethical conflict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6] S. W. Kim, The human rights for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police: focus on psychiatric medical institution cas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Vol. 8, No. 1, pp. 160–184, 2005.
- [7] S. H. An, A study on the conception and attitudes of social workers toward self-determination related

- to mental patients' dischar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2000.
- [8] O. K. Yang, Social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5, pp. 231–261, 1998.
- [9] W. T. Jeon, Ethics in psychiat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2, No. 1, pp. 14–26, 1993.
- [10] C. H. Yoon, Competence of psychiatric research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2, No. 2, pp. 231–240, 1993.
- [11] K. S.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psychiatric nurses for the right of psychiatric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3, No. 2, pp. 35–46, 1994.
- [12] S. H. Kwon, A study on social worker's recognition for the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2001.
- [13] S. M. Kim, A study on recognition for hospitalized patient's righ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1991.
- [14] M. K. Seo,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pp. 231-254, 2003.
- [15] Hamann, J., Cohen R., Leuch, S., Busch R., Kissling, W. Do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ish to be involved in decisions about their medical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2, pp. 2382–2384, 2005.
- [16] H. G. Ju, Effects of human right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 consciousness and attitudes of the mental health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2.
- [17] S. I. Park, & S. M. Lee,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8, No. 1, pp. 185–205. 2000.

정 춘 화(Jung, Chun Hwa)



• 2008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영동대학교 간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bomgot@yd.ac.kr

고 성희(Ko, Sung Hee)



· 197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간호학석사)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이학박사)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 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 E-Mail: jane@jbnu.ac.kr

김 지 영(Kim, Jiyoung)



· 1995년 9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간호학석사)

•2003년 9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kimjjy@jbnu.ac.kr